##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0

발의연월일: 2020. 7. 9.

발 의 자: 박완수ㆍ이종배ㆍ김기현

강대식・조수진・조경태

태영호・강기윤・최승재

金炳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급격한 정책의 시행 및 전환에 따른 국정 혼란과 국민 생활 및 시장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위해 국토, 교통, 에너지, 재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7년에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원전산업을 선도했던 기업이 십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백 개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불과 지난 3년 만에 약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에 따라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음. 또한 최근 해당 지역 상공계의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분기 연 속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비 투자 등을 당초 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른 경남과 창원 지역의 산업위기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행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제2항).

#### 법률 제 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지역의"를 "정부 정책이나 산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역의"로, "처하여"를 "처하는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 대통령령으로"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기관의"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8의2
이란 <u>지역의</u> 주된 산업이 위	<u>정부 정책이나 산업환경</u>
기에 <u>처하여</u> 지역경제여건이	의 변화 등으로 지역의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u>처하는 등</u>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	
역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생 략)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u>대</u>	<u>,</u> 대통
<u>통령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	<u> </u>
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	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상자원부장관은 <u>전문기관의</u> 의	<u>신청을</u>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

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문기관의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